

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인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76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5월 26일
발 의 자: 김인제 의원(1명)
찬 성 자: 강석주, 김성준, 남창진,
박승진, 박철성, 봉양순,
송도호, 오금란, 유정희,
이영실, 이원형, 이종태,
이종환, 임종국, 정준호,
최기찬, 최재란 의원(17
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고(高)당류 간식의 유행으로 아동 청소년의 당류 과다섭취에 따른 건강 문제가 확대됨에 따라, 정보통신기술(손목닥터 9988 앱 등)을 활용한 올바른 당섭취 습관 형성 정책이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되고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, 참여 및 기여도에 따른 보상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영양 식생활 관리사업을 영양관리사업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함.(안 제11조제1항제7호 신설)
- 나. 시민이 영양 식생활 관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 실적,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1조제3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, 국민영양관리법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영양·식생활 관리 사업

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사업 참여 기간의 참여 실적, 횟수,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활동비, 상품권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내용,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(영양관리사업의 추진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 1. ~ 6. (생략) <u><신설></u> 7. (생략) ②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제11조(영양관리사업의 추진) ① 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<u>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영 양·식생활 관리 사업</u> 8. (현행 제7호와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사업 참여 기간의 참여 실적, 횟 수,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활동 비, 상품권 또는 물품 등을 예산 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</u> ④ <u>제3항에 따른 지원 내용, 기 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.</u>

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(영양관리사업의 추진)제1항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영양·식생활 관리 사업 관련 비용이 발생하나 서울시 관련부서(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) 예산설명서 등 확인결과 **기추진사업¹⁾**이므로 별도의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아 **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**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[기추진사업] 서울시 시민건강국 2025년 <서울시민 저당 식생활 인식 개선(달달 9988)> : 640,067천원

※ 사업내용

◦ 사업기간 : 2025. 1. ~ 12.(연례반복)

◦ 지원대상 : 서울시민(집중관리군: 아동, 청소년, 청년층)

◦ 사업내용

- 특화 프로그램 아동

⇒ 청소년 대상 : 달달 원정대 프로그램 운영(손목타터9988 연계)